

## 論文

## 電気通信政策과 電波管理의 発展方向\*

正会員 王 志 均\*\*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Radio Administration in Korea

Jee Kyoon WANG\*\*, Regular Member

**要約** 運信部에서 直接經營하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은 1982년 1月 1日을 期하여 韓國電氣通信公社가 專担하게 될에 따라, 運信部의 行政組織은 革新的으로 改定되리라 한다. 此際에, 通信科學을 專攻하는 立場에서 우리 나라 運信行政의 核心이 될 電氣通信政策과 電波監理의 發展을 위하여 가장 重要한 組織創造와 人事改革의 兩側面을 積極究論함으로써 그의 方向을 提示하였다. 이 比較研究로서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을 日本電信電話公社에 依한 营業과 郵政省에 의한 監理로써 模範的으로 運行하고 있는 日本国의 事例를 摂하였으며, 國内外의 關係文献과 最新의 資料에 의하여 參考하였다.

**ABSTRACT**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communications shall be remarkably reorganized, in accordance with the inauguration of Korea Telecommunication corporation which will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Ministry, starting from the 1st of January, 1982. On this occasion, I, as one of communication scientists, would like to recommend some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elecommunications policy and Radio Administration which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departments of Korea, particularly confined to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nel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s. With a view to make a comparative perspective, I took the model of Japanese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 because of its efficient performance by way of coordinating between business side of Corporation (N.T.T.) and regulatory side of the 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books and documents.

## 1. 머리말 : 問題의 提起

우리는 待望의 80年代를 맞이하였으며 希望한 第五共和國의 進軍도 開始되었다. 새로운 蹤進을 위한 적지 않은 改革이 進行되고 있는 바, 우리 國家의 中央行政組織에 對한 改正事業도 그 中의 하사로서 期待되고 있다.

報道에 의하면, 政府의 모든 機構が 縮小되고 公務員도 減量될 것이라고 한다. 特히, 運信部는 電氣通信公社가 82年 1月 1日 發足되므로 交運部에 풀어

가게 되든지, 심지어는 不必要하게 될 것이라는 極言까지 있다!

行政의 民主化 및 能率化를 위하여 行政組織이 改革되는 것은 發展行政으로서 讚揚될 일이지만, 不合理한 縮小·減員의 斷行은 오히려 逆效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事前에 充分한 檢討가 慎重히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最近의 자못 具體적인 報道에 의하면, 運信部의 中央機構로서 計劃局·電務局 및 保全局은 废止되고 電

\*1981年度 韓國通信省 第5次 秋季演習세미나(1981年 10月 23일)의 發表論文

\*\*光云工科大学 電子通信工学科  
Dept. of Telecommunication  
Kwang Woon University, Seoul, 132 Korea  
論文番号: 81-1 (接受 1981. 9. 25)

1) 中央日報(1981. 8. 22) 記事: “行政기구 縮小개편”, 創刊부에 전 신전화公社가 떨어져 나가고 교통부에서 철도공사가 떨어져 나가면 2部를 합쳐 交運部로 만들고, 서울신문(1981. 8. 14) 記事: “政府 기구 축소, 高位職 감축”, 전기통신공사가 생길 경우 創刊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음.

氣通信政策局을 新設하여, 郵政局에서 떠나오니 换對替業務를 따로 떠여 專担하는 换對替局을 新設 而外局이니 電波管理局을 内局으로 하리라 한니?

1980年 本 學會 秋季學術 發表會議에 筆者は 「遞信部의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新設이 바람직하며 電波管理局은 格上強化되어야 한다」라고 發表한 바 있다.<sup>3)</sup>

此際에, 上記 電氣通信政策局에 관하여 그의 發展方向을 提示할 立場에 있다고 筆者は 自認하며, 이는 아직도 實現의 曙光이 비치지 않은 電波監理行政의 強化 發展을 다시 한번 補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릇, 通信은 人體內의 神經體系(nervous system)에 比喻되므로 社會의 通信網은 國家의 動脈에 該當하며 国民은 通信없이는 現代社會生活을 當為할 수 없게 되었다.<sup>4)</sup>

이와같이 重要한 通信에 對한 우리 國家行政을 一 大別하면, 郵便·電話·電信 等을 管理하는 遷信部의 行政과 新聞·〈라디오〉·TV等을 管掌하는 文化公報部의 行政이 되니.

따라서, 政府機構縮小가 大命題라고 한대만, 通信行政이라는 大原則에서 우리 나라 通信의 総本山이 遷信部에 文公部의 上記 〈폐스官〉部面을 果敢히 統合하는 試案도 나올 법 하니. 事實, 外國에서는 電子新聞(Electronic Press)이라 하여 家庭用 〈에서울리〉로서 電送되는 新聞을 볼 수 있게 되었다.<sup>5)</sup>

이와같이 通信의 〈미디어〉는 驚嘆스럽게 發展되며, 通信衛星을 經由한 電子郵便(Electronic Mail), Computer를 利用한 데이타通信, 〈디지탈〉高速圖像通信等에 의하여 徒來의 電信·電話라는 概念은 革新되었으니, 이를 管理하는 遷信部의 機構는 庶當 改定되어야 할 時點에 이르렀다. 이를 或者는 T & T에

서始作하여 C & C를 거쳐 D & D의 時代로 向하는 것이라고 評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이 時代의 变遷과 依る 電氣通信 〈미디어〉에 관한 情報의 調査·分析·研究·活用 等의 政策遂行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實現이 우리 遷信部에는 꼳 新設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便, 電氣通信에 關하여는 國際間의 緊密한 協力이 必然의 이므로 1865年 5月 17日 人類 最初의 國際協力機構로서 万國電信聯合이 成立되었거니와,<sup>7)</sup> 이는 今은 現의 國際電氣通信聯合(I.T.U.)으로서 우리 나라도 1952年 1月 31日 此에 加入한 바 있다.<sup>8)</sup>

電氣通信의 〈미디어〉中에서도 電波는 그가 지닌迅速性과 国境을 超越하는 广播性으로 因하여 가장 國際性이 높은 值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對外通信은 거의 全部를 電波 〈미디어〉에 의하고 있으므로<sup>9)</sup> 이 電波에 대한 行政은 우리 通信行政中에서 最優先視 되어야 한 部門이다. 雖然 아니라 未來 手段으로써 南侵반을 노리고 있는 北匪가 I.T.U.에도 加入하여 間接侵略을 慎行하고 있으므로 國家安保上의 見地에서 遷信部의 電波行政은 強化 对備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電氣通信政策과 電波管理의 두 部門은 遷信行政中의 代表 및 核心的한 機構로서 가장 研究되어야 할 値がある다고 보는 것이다.

近來, 行政의 値提高를 위하여 行政의 民主化 및 行政의 能率化가 高唱되고 있는 바, 確密히 이를 充明하나니 行政의 民主化는 目的의 値이고 行政의 能率化는 手段의 値이며 分明하여 이 目的의 値는 手段의 値와 一致됨이 理想의이라고 하겠다. 이 行政의 能率化 實現을 尋래서는 豐多의 方法이 있겠지만, 比較行政論<sup>10)</sup>의 追求方法이 가장 科学의 일 것으로 認められる. 따라서, 中進國인 우리 나라에서 遷信部의 組織改

- 3) 1980年 10月 24日 韓國通信学会 主催 學術 세미나, 王志均 發表, “通信主管部의 行政組織에 對한合理化 方案”, 韓國通信學會誌 第5卷, pp. 17~25.
- 4) 三浦一郎, 通信政策의 課題と展望, 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東京, 1974, p. 3.
- 5) 國際通信電話, 國際通信文化研究社, 東京, 1981年 1号, p. 27. “電子新聞”
- 6) 서울신문(1980. 6. 18) 記事: “英國에 衛星배당부, 1隻에 加로 電子 電送, 國際電信電話: 前掲書, 1977年 6号, p. 35, 1970年に 米国で誕生した 電子郵便は 1977年には 取扱通數 約 2,500万數に 達する.”

- 7) 相木輝彦, “電氣通信, 過去·未來”, 國際電信電話, 前掲書, 1981年 4月号, pp. 18~19. 電氣通信 次に来るものは T & T(電信·電話)から, C & C(コンピュータ·コムニケーション)を 經て D & D(DDX+Database)의 時代である.
- 8) 朴觀淑, 新版 國際法, 法文社, 1956, p. 21, 万國電信聯合 (Universal Telegraphic Union)
- 9) 遷信部, 電氣通信八十年史, 1966, 附錄, pp. 813~814
- 10) 白榮大, 王志均: 世界通信交通地理, 電波科學社, 1978, 付錄, pp. 5~92
- 11) F. HEADY, 余元宇 訳, 比較行政論, 法文社, 1976, 付錄, pp. 15~64

革에 앞서서 必히 先進국의 当該 行政先例를 比較考察함이 順序이며 有益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接近方法은 文獻과 事例의 研究方法에 의한 比較分析을 取하여, 다만 世界의 最先進국인 美國과 東洋의 先進국인 日本国의 当該 行政事例를 標本으로서 調査코자 한다.

美國에 있어서는 公衆電氣通信事業은 完全한 民營이고 이의 規制도 委員會制<sup>12</sup>에의하고 있으므로 이제서 電氣通信公社를 始作코자 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또 未来의 指標라고나 할 수밖에 없다. 이에 反하여 日本国은 1952年 8月 1日 電信電話公社(N.T.T.)를 發足시켰고 郵政省에서 이를 監理하여 오고 있으므로<sup>13</sup> 우리에게는 가장 適切한 比較行政이라고 하여야 되겠다.

이제, 우리 나라의 遞信行政中 電氣通信과 電波管理의 發展 方向에 관하여 日本의 行政先例를 比較資料로 삼아 가장 接近된 建設的인 代案을 提論코자 한다.

이 小見이,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發展促求를 위한 莘々가 있기를 期待한다.

## 2. 電氣通信政策의 發展方向

### 1. 電氣通信政策의 意義

#### (1) 電氣通信의 意義

電氣通信의 定義에 関하여는 電氣通信法에도 明示되어 있으나,<sup>14</sup> 条約優先主義<sup>15</sup>에 따라 國際電氣通信協約 附屬無線通信規則에서의 規定을 確認하면 다음과 같다.

Tele-communication; Any transmission and emission or reception of signs, signals, writing, images and sounds or intelligence of any nature by wire, radio, optical or other electro-magnetic systems<sup>16</sup>

日人 市橋良治氏는 이를 다음과 같이 分析 說明하고 있다. 즉, 「電氣通信이란,

#### ① 方法…有線·無線·光線 等의 他의 電磁的方式

12) Rules and Reugulation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U.S.A.

13) 株式会社 教育社, 便覽 郵政省, 1979, 東京, p.21

14) 電氣通信法 第2条 第1号: 電氣通信 — 有線·無線·光線 및 其他的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모든 種類의 符号·文書·音聲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

15) 電氣通信法 第11条(國際電氣通信業務)

16) Radio Regulations annexed to the I.T.C., 1979, Geneva, by I.

에 의하여

② 物…모든 種類의 記号·信号·文書·影像·音聲 또는 情報을

③ 行為…伝送하고, 発射하며 또는 受信하는 것이다.<sup>17</sup>

或者는 이를 나서 附会하여 上記中 ①方法을 媒体, ②目的物을 客体, ③行為를 主体(人間)이라고 解釋하고 더 나아가 이를 基礎理論으로 하여 遞信部은 電氣通信部로呼称한 後 ①方法 → 電氣通信技術局, ②客体 → 電氣通信情報局, ③行為 → 電氣通信運用局으로 할이 理想의 아다는 意見도 있는데 바, 歷史的事実로서 日本에서는 電氣通信省<sup>18</sup>이라는 先例도 있었으므로 一理있는 該局 改革案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2) 政策의 意義

政策이라는 낱말의 定義에 관하여는 몇 가지 學說이 있으나, 政策學의 觀點에서 “政策이란 当為性(Desirability; Ought-to)에 立脚한 社會價值體系(Social Value System)의 變化를 通해서 形成되는 行動志向의企図이다”라고 하여<sup>19</sup> 가장 適正할 것 같다.

政策科學에 서는 政策을 「政府·社會組織·企業·個人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갖고 있는 目標의樹立, 達成, 評価, 再樹立의 全過程에서 最小의 資源으로 最大의 結果를 予見할 수 있는 代案策을 選擇하는 行為이다」라고 보고 있다.<sup>20</sup>

政策學이건 政策科學이건 問에, 政策에 관하여는 그 樹立의 過程(Process Analysis) 보다는 政策의 效果面(Impact Analysis)에 더 研究의 方向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라스웰〉(LASSWELL)은 政策效果의 分析을 社會發展의 道具役割임을 強調하고 있는 바, 그의 政策決定의 方法과 模型은 다음 〈表-1〉과 같다.<sup>21</sup>

#### (3) 電氣通信政策의 意義

通信政策論에는 그 内容으로부터 세 가지의 方向이 있다는 見解가 있다. 첫째, UNESCO通信政策論,

T.U. 1-1

17) 市橋良治, 國際電氣通信條約講義, 電氣通信協會, 1959, 東京, pp.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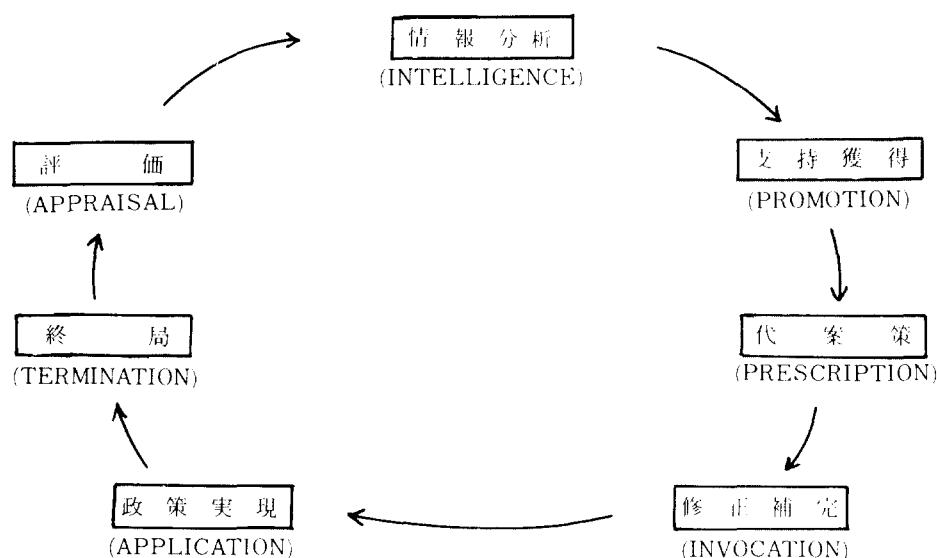
18) 株式会社 教育社, 便覽 郵政省, 前掲書, p.132, 遞信省의分割(郵政省と 電氣通信省, 1946年 6月)

19) 前註 外 5人, 政策學概論, 法文社, 서울, 1980, p.39

20) 崔平吉, 韓國의 政策科學, 延世大學校, 1981, p.1

21) 崔平吉, 上掲書, p.13

(表1) LASSWELL의 政策決定의 段階圖



\* 資料 : (HAROLD D. LASSWELL,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둘째, EUROPE型 通信政策論 세째, 美国型 通信政策論이 그것이다.<sup>22)</sup>

通信技術의 進歩, 各〈미디어〉의 役割·技能·重要性의 变化 등으로 因하여, 通信〈미디어〉에 関한 法律·政策의 檢討 等에 主要 関心을 帶고 있는 것이 바로 美国型 通信政策論이다.

따라서, 電氣通信政策이란 上記中의 세째 番인 美国型 通信政策論에 屬類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COMMUNICATIONS POLICY(미디어政策論)이나 COMMUNICATION POLICY(抽象的인 政策論)가 아닌 TELECOMMUNICATIONS POLICY(電氣通信〈미디어〉政策)인 것이다.

## 2. 電氣通信政策局의 進路

### (1) 電氣通信政策機構의 來歴

政府의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大統領 機関이 첫 登場한 것은, 1968年 12月 7日 提出된 〈ホーリー 우〉 教授의 研究報告書에 따라 美国 大統領府 내에 Office of Tel-communications Policy(O.T.P.)가 新設된 것이 先駆이다.<sup>23)</sup> 그러나 当時の 大統領 이었던

JHONSON氏가 NIXON氏로 交替되자 곧 이 機構가 商務省로 移管되었다는 데, 아마도 이는 通信을 通信機器 販売產業으로만 看해 处理하 始め 것으로 推定된다. 그 후 著起되었던 Watergate 事件으로 因하여 〈니슨〉大統領의 失脚을 가지운 通信秘密侵害事故는 이 機構의 大統領府 復元을 악화시做的 것이다.

日本国은 1970年 6月 15日 郵政大臣 官房室에 通信政策課를 新設하여 그 밖에 調査係,企劃係, 外國調査係, 情報產業調查室 및 政策企劃官室을 두었었다. 이 課의 任務는 技術革新에 의한 通信〈미디어〉의 多樣化, 情報화의 進展 等에 對処가 위하여, 通信行政 全般에 關한 基本的인 政策의 企劃, 이에 必要한 調査 및 研究에 關한 事務를 司掌하는 것이다.<sup>24)</sup>

特に 注目해야 할 것은, 이 電氣通信政策課는 1980年 7月 1日 電氣通信監理官署를 合併한 電氣通信政策局으로 格上した 規模을 擁有한 事実이다. 이 機構 図은 附录 〈表-2〉와 같다.<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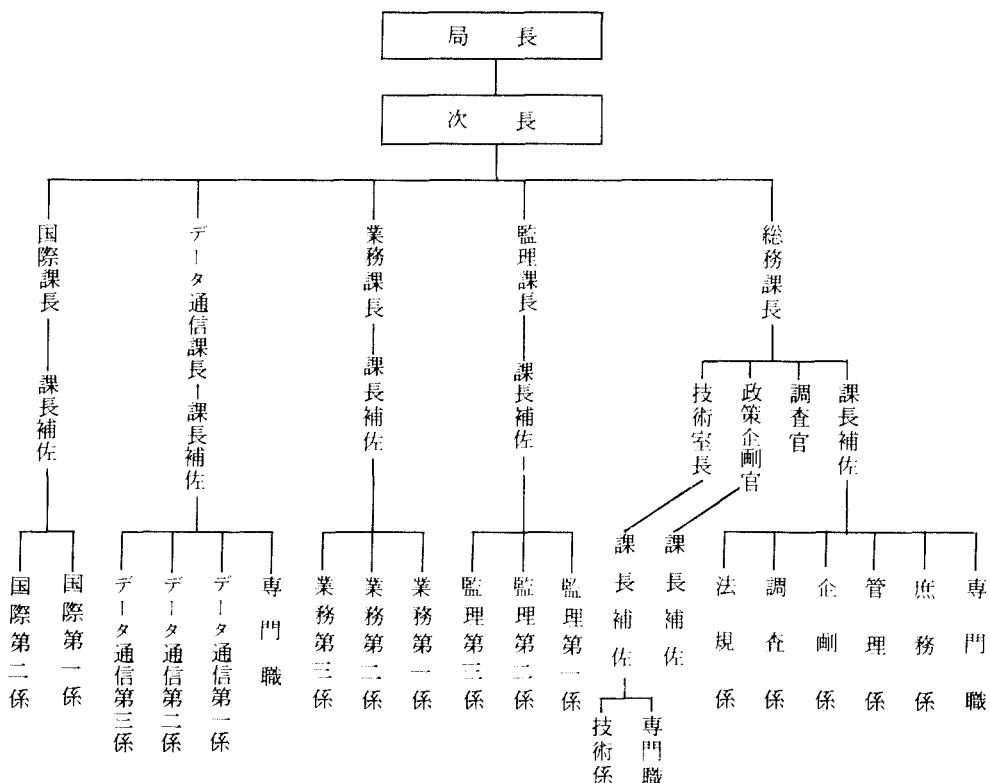
22) 電波時報, 電波振興会, 1980年 5月号, ニュースと ポリシーエネゲイション, 東京, p.2

23) 三浦一郎, 前掲書, PP. 94~95

24) 株式会社 教育社, “便覽 郵政省”, 前掲書, p.26

25) 日本 郵政省組織令 及び 日本 郵政省組織規程

〈表2〉 日本電氣通信政策局機構図



\* 資料：電波時報，1980年 No.6 (P.37)

## (2) 電氣通信政策局의 任務와 組織

日本郵政省設置法을参考로 하여, 우리나라遞信部에新設되어야 할電氣通信政策局의任務를私案으로서提示한다. 아울러日本郵政省組織令 및同規程에規定된日本電氣通信政策局內의組織과各任務를調查하여報告한다.

#### 1) 電氣通信政策局의 任務(案)

電氣通信政策局은 다음事務를掌理합니다. 다만, 電波管理局의所掌事項은除外합니다.

- ① 電氣通信의 規律에 관한 政策의企劃·立案 및 推進에 관한 일
  - ② 電氣通信을 規律하고 監督하는 일
  - ③ 國際電氣通信의 管理에 관한 國際의 締約와 商議外 締結 및 國際電氣通信聯合와 其他 機 関과의 連絡에 관한 일
  - ④ 通信保安에 관하여 規律하고 監理하는 일
  - ⑤ 國家非常時에 對備하여 電氣通信의 体制 및

### 運用을 강조하고 훈련하는 일

- ⑥ 韓國電氣通信公社 및 遷信部 傘下 团体를 監理하는 일
  - ⑦ 公共企業体 等 労動委員會에 对한 調停 및 仲裁의 請求에 관한 일(韓國電氣通信公社에 限る)
  - ⑧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法令을立案하고, 이를 實施하는 일
  - ⑨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事務取扱方法을 制定하고, 이를 實施하는 일
  - ⑩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研究 및 調査 또는 이를 部外의 研究 機関에 委託하는 일
  - ⑪ 所部의 職員의 需要 및 採用에 관한 計劃案을 作成하는 일
  - ⑫ 所部의 職員을 訓練하는 일
  - ⑬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予算案을

- 準備하고, 成立予算에 基한 業務計劃을 実施하는 일
- (14)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弘報를 行하고, 統計를 作成하는 일
- (15) 前各号에 揭記한 일 以外에, 電氣通信에 관하여 遷信部의 權限으로서 法令이 定하는 事項을 处理하는 일
- (16) 前各号의 事務에 附帶하는 일
- 2) 日本国의 電氣通信政策局의 職務表
- (가) 總務課
- (1)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하여 總合調整을 行하는 일
  - (2) 電氣通信의 規律에 관한 基本的인 政策의企劃, 立案 및 推進에 관한 일
  - (3) 有線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
  - (4)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
  - (5)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中, 電氣通信에 関係되는 技術的事項에 관한 事務를 決定하는 일
  - (6)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研究 및 調査에 관한 管理를 하는 일
  - (7)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事務取扱方法을 制定하는 일
  - (8) 所部職員의 需要 및 採用에 관한 計劃을 作成하는 일
  - (9) 所部職員을 訓練하는 일
  - (10)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予算案을 準備하고, 成立予算에 基한 業務計劃을 作成하는 일
  - (11)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에 관한 周知를 行하고, 統計를 作成하는 일
  - (12) 電氣通信政策局의 所掌事務로서 他課에 属하지 않는 일
- (나) 監理課
- (1) 電信電話公社 및 國際電信電話株式会社의 監督 및 이에 관한 法令의 立案에 관한 일
  - (2) 電信電話設備의 拡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관한 債券의 發行條件 等의 決定을 하는 일
  - (3) 電信電話公社 共濟組合에 관한 일
  - (4) 公共企業體等 労動委員會에 对한 調停 및 仲裁의 请求에 관한 일(N.T.T에 限함)
- (나) 業務課
- (1)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
  - (2) 電信電話設備의 拡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관한 일
- 한 法律의 施行에 관한 일
- (3) 有線放送電話에 관한 法律의 施行에 관한 일
- (4) 公衆電氣通信業務의 規律 및 監督에 관한 研究 및 調査를 行하는 일
- (5) 前各号에 揭記한 以外에, 公衆電氣通信業務의 規律 및 監督에 관한 일
- (라) データ通信課
- 다만, データ通信에 関한 것에 限한다.
- (1) 有線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技術 基準에 関한 것除外함)
- (2) 公衆電氣通信法의 施行에 관한 일
- (3) 電信電話設備의 拡充을 위한 暫定措置에 관한 法律의 施行에 관한 일
- (4) 電氣通信의 法律 및 監督에 관한 研究 및 調査를 行하는 일
- (5) 前各号에 揭記한 外에 電氣通信의 規律 및 監督에 관한 일
- (마) 國際課
- (1) 國際電氣通信의 管理에 관한 締約의 商議, 및 締結 및 國際電氣通信連合과 其他 機関과의 連絡에 관한 일
- (2) 外國에 있거나 電氣通信事情의 研究 및 調査에 관하여, その他 決定을 하는 일

### 3. 電波管理의 發展方向

#### 1. 電波管理의 意義

##### (1) 電波의 定義

電波라는 단말의 定義에 관하여는 우리 나라 電波管理法에도 明示되어 있으나, 國際法 優先主義<sup>26)</sup>에 따라 國際電氣通信協約 附屬無線通信規則에 서의 規定을 確認하면 다음과 같다.

Radio Waves(Hertzian Waves) : The electro-magnetic waves of frequencies arbitrarily lower than 3,000 GHz, propagated in space without artificial guide.<sup>27)</sup>

日本 電波法에서 電波의 定義는 「人工的導波体のない空間を伝搬する 300万 MHZ 以下の周波数の電磁波」라고 規定하고 있다.<sup>28)</sup> 그러나 日本의 이 定義中 300万 MHZ와 3,000 GHz와 같으면 結局同一의 周波数範圍의 制限이 되지만, 「propagated in sp

26) 電波管理法, 第3条(電波에 関한 条約)

27) R.R. 前掲書

28) 日本 電波法 第2条(定義) 第1号

ace without artificial guide에 該當된 번역에는 若干의 暖昧性이 있다.

이것을 우리 電波管理法에서는, 「電波란 人工의 導引 없이 空間을 伝播하는 3,000 GHZ보다 낮은 周波数의 電磁波」라 하였다. 「導引 없이」가 아니라 「導引 없는」이 옳으므로 이의 是正을 筆者が 指摘하였다.<sup>29)</sup> 이 定義中の 後段을 아예 刪除하여 「電波는 3,000 GHZ보다 낮은 周波数의 電磁波」라고 改定해 버렸다.

그러므로, 電波에 관한 우리 나라의 定義는 곧 바로 簡單하게 볼 것으로 본다.

### (2) 管理의 意義

管理는 「일을 맡아 다스림」<sup>30)</sup>의 뜻으로 英語의 Management에 該當될 것 같다. 現在 電波管理局의 英名은 Radio Regulatory Office로 標記되어 있는 바, Regulatory는 「規定함」 또는 「統制함」의 뜻인 regulate에서 나온 単語인 것 같다. 英語 낱말에는 몇 가지의 뜻이 共存하므로 Radio Managemental Office보다는 Radio Regulatory Office가 官府名의 印象을 풍긴다. 다만, 地方의 電波監視局을 電波監理局으로 改定<sup>31)</sup>한 것은 語句上의 矛盾感이 있다. 辭典에서 監理는 「감독하고 관리함」<sup>32)</sup>이라 풀이되어 있는 바, 監理속에는 管理가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地方局이 中央局을 감독하는 것 같이 보이기 쉽다.

此際에, 中央機構는 電波監理局으로, 地方機構는 각 地方 電波監理局으로, 각각 改稱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電波監理의 重要性

電波의 監理는 實로 國際法(國際電氣通信協約)<sup>33)</sup>에 源源되는 것이므로 電波管理局 全職員은 勿論이고 遷信部 本部의 高位層도 이 条約에 亨通함이 바람직하다. 特히 遷信部 予算担当者나 經濟企劃院 및 国會議員들도 電波管理局은 電話局과 같은 営業機關이 아님을 直觀하여 一般會計로 転換시키고, 充分한 予算을 割当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北傀는 1975年 合法을 仮裝하여 國際電氣通信聯合에 会員國으로서 加入한 後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間接侵權을 慢行하기에 이르렀는 바, 1979年 世界無線通信 主管廳會議에서는 大韓民國이 使

29) 王志均, 電波에 관한 定義의 解釈, 大韓電波協會 会報, 1966年 第20号, pp.17~24

30) 서울明文堂, 명문국어대사전, 1969, p.182

31) 電波管理法, 法律 第3308号, 1980年 12月 31日, 第75条의 4를 改正함

用中인 無線通信用 國際呼出符字列 中에서 HMA~H MZ를 그들의 專用으로 넣어 갖기에 이르렀다.<sup>34)</sup>

뿐만 아니라, 北傀의 不法電波에 의한 放送 紊亂에도 對備하여야 될 것이므로 國家는 安保面에서도 電波監理組織을 보다 強化해야 할 것이다.

마야호로 進行中인 電氣通信公社의 發足 翌後에는 郵便公社의 發足도 予期할 수 있으므로 遷信部의 最後 坐標는 電波管理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電波監理의 重要性은 諸言不要인 所以이다.

## 2. 日本 電波監理와의 比較

### (1) 機構上의 檢討

우리 나라와 日本国의 電波監理行政의 比較 分析을 各 機構表(表3 및 表4)의 対照로 以て 試圖한 즉, 我們의 發展方向이 發見될 것 같다.

즉, 日本의 電波監理局을 標範으로 한다면, 底當히 우리 放送(有線放送도 包含함)은 文化公報部 所管에서 電波管理局으로 統合되어야 하겠고, 無線從事者の 資格検定業務(通信系列: 電波通信 및 無線設備技師(技能士))도 韓國技術検定公團에서 電波管理局으로 還元되어야 할 것이다.

通信의 〈미디어〉面이나 通信人力管理面 및 行政의 単元化에 의한 能率向上이라는 뜻에서 이런 通信行政의 復元은 하루 速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宇宙通信에 관한 中央課 組織의 新設 및 電波研究所의 拡張課題은 우리 電波管理行政의 發展의 進路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第一 時急한 것은 現在의 外局을 内局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他關係部處(文化公報部長官, 海運港灣厅長等)와 均衡이維持되도록 電波監理의 責任者の 階級을 1級(厅長, 次官補 또는 室長)으로 格上 優待하는 일이라고 希望된다.

### (2) 人力面의 專門性 比較

電波行政은 그의 技術性으로 因하여 多은 專門家가 必要하며, 또한 이들의 合力에 의하여 推進됨이 底當하다.

日本의 郵政長官 直屬으로는 電波監理審議會(議員 5名) 및 電波技術審議會(委員 25名 以内)가 있어 諮問을 하는 同時に 司法上의 初審에 該當하는 機能<sup>35)</sup>

32) 명문국어대사전, 前掲書, p.42

33) 國際電氣通信協約: 条約 第384号, 1976年 2月 9日 公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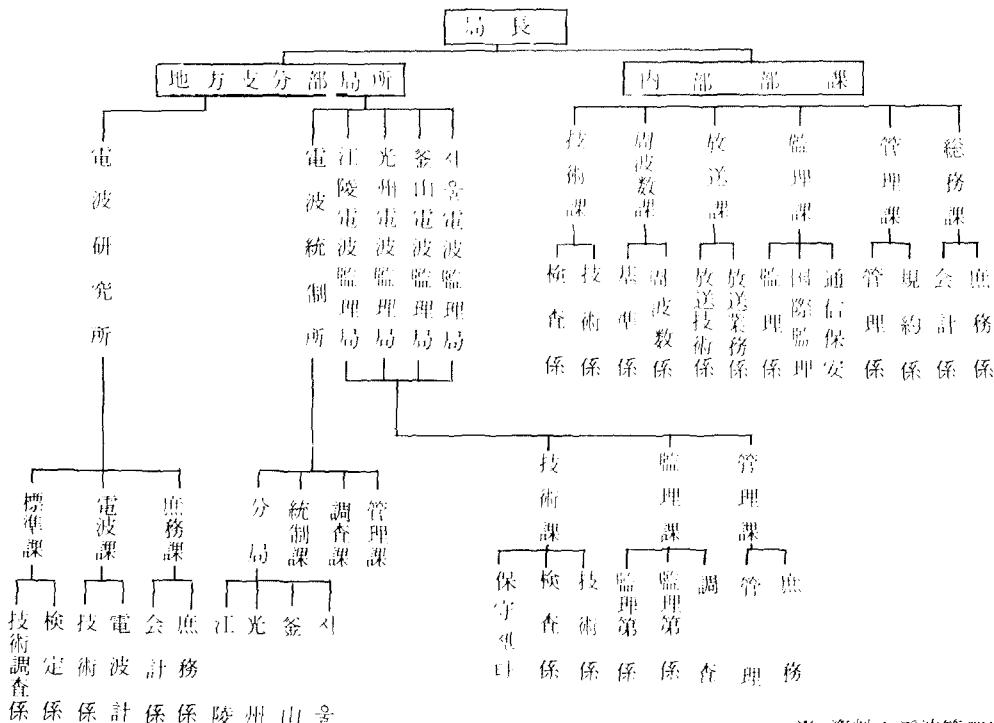
34) 電波時報, 1980年 第1号, 前掲書, p.25

35) 日本電波法, 第7章(異議申立て 訴訟), 同 第7章 92の (電波監理審議會)

(表3-1)

## 電波管理局 機構図

(遞信部 外局)



※ 資料：電波管理局職制

까지도併有개하고 있다.

이는 電波에 관한 專門性을 尊重한 外局이다. 그 외로 電波監理局에는 많은 電波의 專門家를 위한 職責을 두고 있는 바, 이도 電波의 專門性에 基因한 것이다. 즉 局長下의 審議官, 無線通信部長, 監視部長, 放送部長, 各課長, 同輔佐, 調査官, 無線局検査官, 電波監視官, 檢定官, 各課의 專門職, 企画調査室長, 情報処理室長, 難視聽対策室長, 伝搬障害防止係長等이 이에 該當하는 바, 우리 電波管理局에서도 電波의 專門性이 發揮될 수 있는 職責이 많이 차려들고 있다. 특히 本部 各課內에는 專門職 1名이라도 있어야

되며, 本부 各地方 電波監理局에도 各 電波監視官, 電波検査官, 電波試験官이 主任級과 平級으로 나뉘어서 有る<sup>36)</sup>. 우리나라에서도 各地方 監理局에는 電波監視官 1名이라도 들어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總務處가 主管하는 公務員法 및 公務員試験令의 改正이 必須인 바, 그中인 [職群: 通信] 内에 새 職列로서 通信監理官(通信主職) 및 通信研究官의 두 가지바이라도 增補하고 各階級도 1級까지 异進할 수 있도록 時急히 改定되기를 促求하여 마지않는다. 外務公務員法은 改正되어 通信職列의 1級까지 异進될 수 있게 되었다.<sup>37)</sup>

1. 外交職公務員

2. 特任公館長

3. 外務行政職公務員

4. 外信職公務員

\* 第4条 第12項: 外務公務員의 階級은 다음 각号에 依한다.

1. 外交職公務員 特1級, 特2級, 1級 대자 5級

2. 外務行政職 및 外信職公務員 1級 대자 9級

36) 電波時報, 1979年 3月号, 前掲書, pp. 7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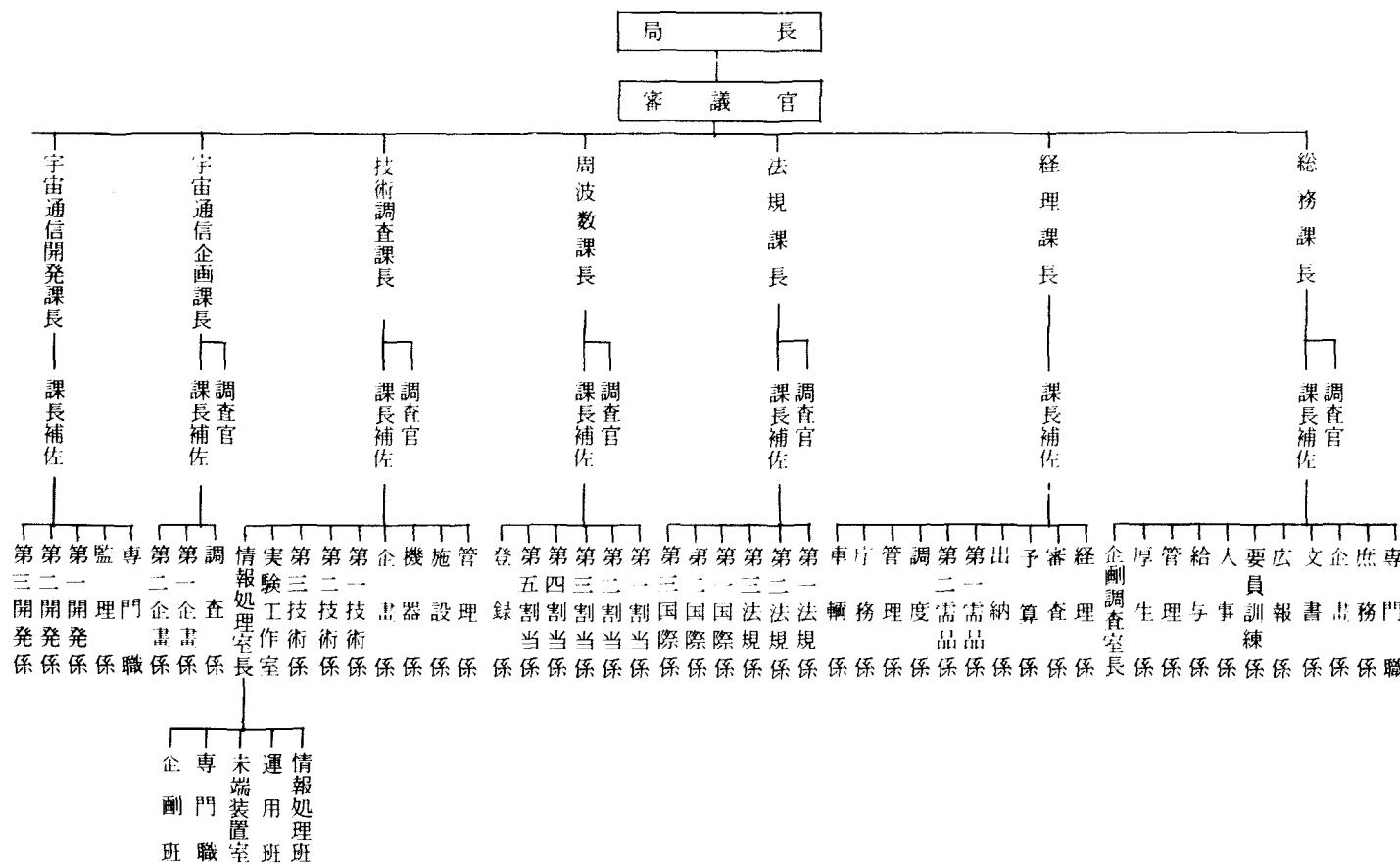
電波組織年表: 1975, 4. L 地方電波監理局, 主任電波検査官, 電波検査官, 主任電波試験官, 電波試験官, 主任電波監視官及び 電波監視官を置く(以下「専門官制度」という, 以下 同じ)

37) 外務公務員法: 1981. 3. 14, 法律 第3384号)

☆ 第2条 第1項: 外務公務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表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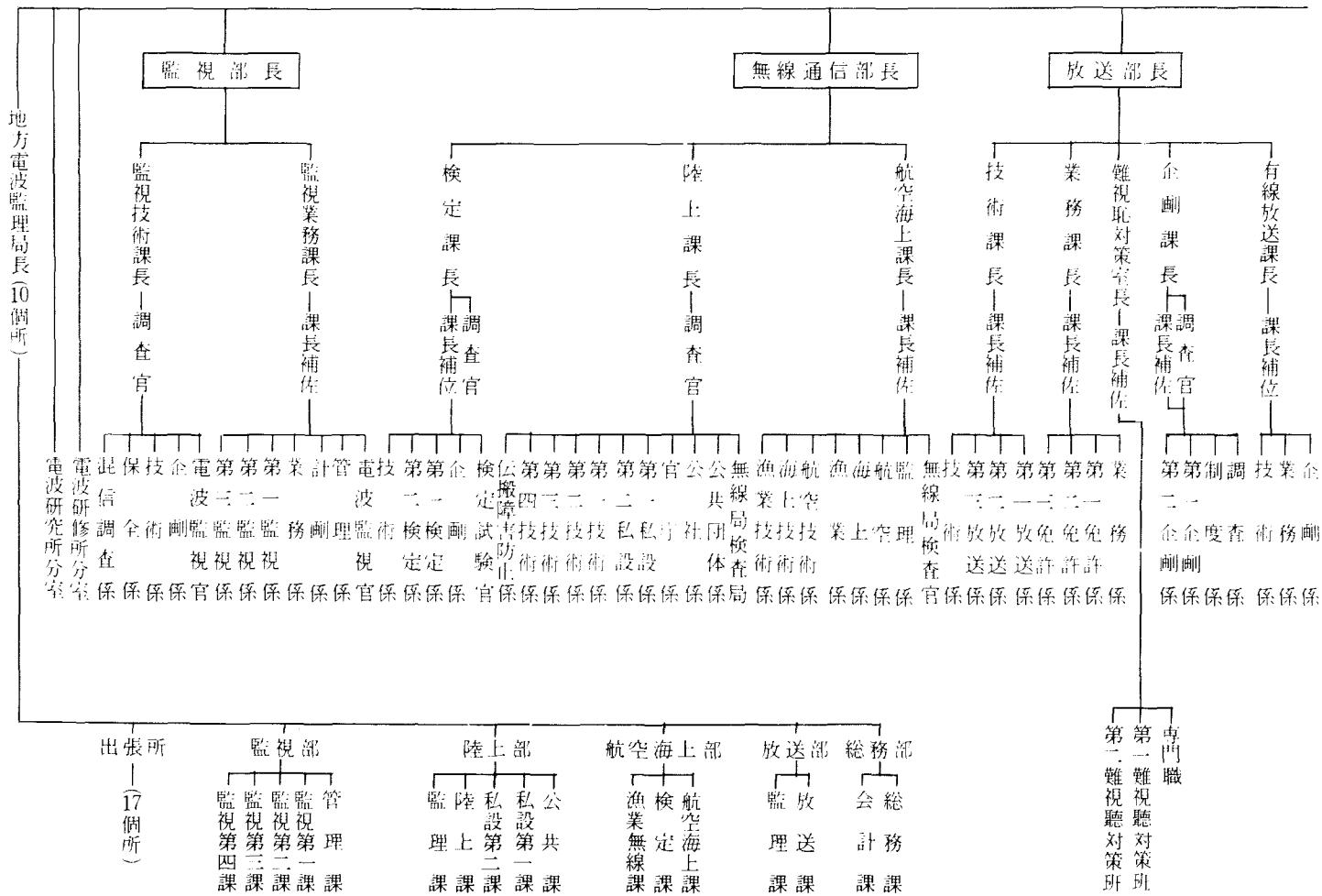
# 日本電波監理局 機構図 (No. 1)



\* 資料：日本郵政省組織令 同規程

(表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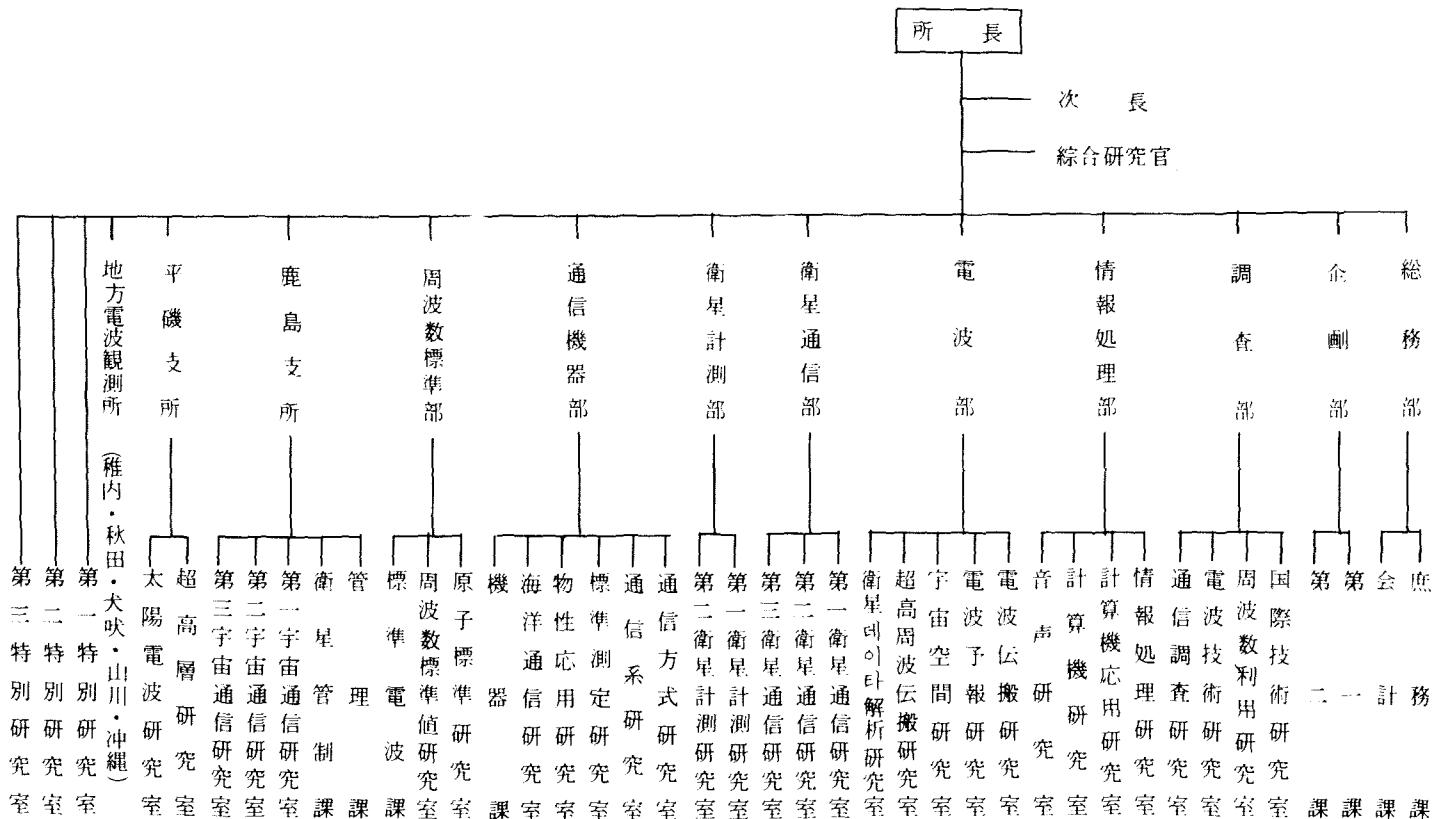
日本電波監理局 機構図 (No. 2)



&lt;表4&gt;

## 日本電波研究所 機構図

(郵政省 附属機関)



(※ 資料: 電波時報, 1980. 3. p. 79)

電波의 專門性이 尊重되어야 올바른 電波 行政이 될 것이며, 올바른 電波行政이 되어야만 우리 運信行政은 當然 發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맷음 말 : 또 다른 代案을 模索하며

待望의 80年代, 趙進하는 우리 第五共和国의 改革事業으로서 運信部의 中央機構가 革新되는 것은 當然으로 期待되는 일이다.

公衆電氣通信事業이라는 企業을 電氣通信公社에 委任하고 運信部는 政府로서 通信의 監理權을 하제되는 것은 行政의 主體性 確立上 참으로 進化된 일이라고 讀揚된다.

通信은 社會의 動脈일 뿐 아니라, 国民은 通信 없이는 現代社會生活을 常為할 수 有無故로 通信 監理行政의 中央機構 改革事業은 実로 莫重한 国家大事의 하나인 것이다.

이 聖業 对備에 資하기 위하여, 筆者는 이미 運信部의 中央機構로서 電氣通信政策局의 新設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電波管理組織의 強化 및 格上이 necessary함을 主張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此際에 通信人の 한 사람으로서 그 主張을 補論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여 敢히 그 發展 方向을 提示코자 하였다.

行政의 民主化는 目的價值이며 行政의 能率化는 手段價值인 바, 이의 一致가 바람직하므로 이를 위한 研究로서 先進國의 行政先例를 文獻에 의하여 追求키로 하였다.

美國의 公衆電氣通信事業은 完全民營이고 이에 대한 規制도 委員會制임에 反하여, 日本은 電信電話公社運營으로서 郵政省이 監理하고 있음이 判明 되었기, 이 研究는 主로 日本国의 該當行政을 比較資料로 捉하기로 決定하였다.

먼저, 電氣通信政策局의 發展方向을, 電氣通信과 政策의 定義 및 来歴부터 探究한 後 우리 나라 該局의 任務方向을 引出하였고 아울러 奉下組織에 関한 日本의 實例를 調査, 報告하였다.

電波管理의 發展方向, 電波 및 管理의 定義부터 檢討한 後 韓國과 日本의 該局 機構表를 作成하여 比較 分析하였던 바, 放送(有線放送 包含)과 無線從事者 檢定 業務는 他部處에서 電波管理局으로 轉元됨이 바람직하며, 하루速히 宇宙通信 業務開始와 電波에 관한 研究業務 強化를 하여야 되겠다는 結果를 찾기에 이르렀다.

第一 먼저, 電波行政의 專門性이 尊重되도록 公務員

法 等이 改正되어 通信 職列속에 通信監理官 및 通信研究官을 增補함이 最時急 課題라고 論決되었다.

以上의 切実한 建議案은 〈拉斯anyl〉의 政策決定段階 中의 初環인 「情報分析」에 不過한 것인즉 〈세미나〉 等에 의한 支持獲得과 代案策 및 同僚的 指導者에 의한 修正補完이 期待된다. 이는 다시 feed back 理論으로서 “政策實現”, “終局”, “評価” 및 “情報分析” 으로 模索 發展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此小見이 우리 나라 通信行政의 發展 促進에 寄与될 것으로 믿어진다.

#### 参 考 文 献

1. 제정법령집, 제정부, 1977
2. 국제신기동침략(조약 제 564호), 1976. 2. 9. 판보 제 7267호
3. 前編外, 新六法, 民衆書館, 서울, 1968.
4. 金曾漢, 法學通論, 菲声文化社, 서울, 1960.
5. 朴觀淑, 新版 國際法, 法文社, 서울, 1976.
6. 新井隆一外, 行政法, 有斐閣, 東京, 1980.
7. 電波法令集, 電波振興会, 東京, 1981.
8. 通信白書, 郵政省, 東京, 1980.
9. F. HEADY, 徐元子 訳, 比較行政論, 法文社, 서울, 1976.
10. 前編外, 政策學概論, 法文社, 서울, 1980.
11. 便覽 郵政省, 株式会社 教育社, 東京, 1979.
12. 三浦一郎, 通信政策の課題と展望, 第一法規出版株式会社, 東京, 1974.
13. 電氣通信八十年史, 運信部, 1966.
14. 『명문』 어려운 사전, 서울明文堂, 1969.
15. 金格澤, 通信事業經營概論, 韓國電氣通信產業研究所, 서울, 1975.
16. 金忠烈, 國際郵便概要, 尚玄文化社, 서울, 1966.
17. 王志均, 電波管理法講義, 海綠社, 서울, 1974.
18. 月刊, 電信電話研究, 1976~1981, 韓國電氣通信產業研究所, 서울.
19. 電波時報, 1976~1981, 電波振興会, 東京
20. 國際電信電話, 1976~1981, 國際通信文化協會, 東京.
21. FRED W. RIGGS, 朴東緒 外 訳, 新生國行政論, 大韓教科書株式会社, 서울, 1975.

王志均 Jee Kyoon WANG 世会員

1923年7月25日生

1945年8月：舊官立朝鮮無線電信講習所卒業

1977年2月：建国大學校行政大學院 行政科(通信行政專攻)修了

1950年 1945年：交通部技工(航空及 鐵道 通信)

1951年~1959年：大韓海運公司等 通航員(海上通信)

1960年~現在：光云工科大學教授, 同大學附設通信科學研究所長, 本学会常任理事

